

2024년 의료급여제도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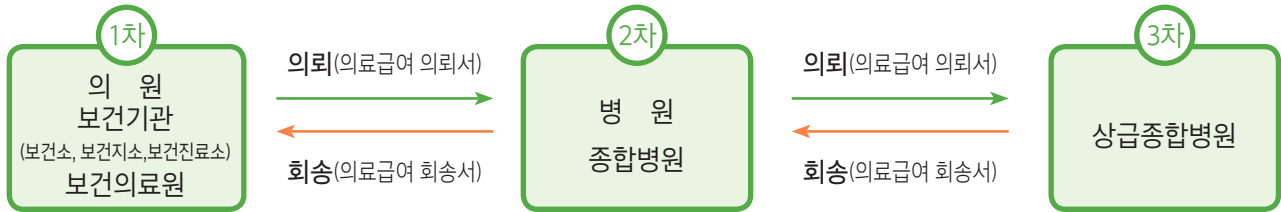


의료급여제도는?

-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

의료급여 이용절차

- 의료급여수급권자는 **제1차 의료기관(의원급)**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
- 2, 3차 의료기관의 진료 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이용 가능(유효기간 : 7일)



※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(의료급여의뢰서 없이) 이용 시 **진료비 전액 본인부담**. 단, 응급·분만 등의 특수한 상황은 단계별 절차 없이 이용가능(절차의 예외)

의료급여 본인부담금

구분		1차 (의원급)	2차 (병원, 종합병원)	3차 (상급종합병원)	약국	PET 등
1종	입원	없음	없음	없음	—	없음
	외래	1,000원	1,500원	2,000원	500원	5%
2종	입원	10%	10%	10%	—	10%
	외래	1,000원	15%	15%	500원	15%

※ 단,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%에 해당하는 금액(정률제 부담)

의료급여일수



의료급여 상한일수

- 병·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, 입원일수 및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
- 등록 중증질환, 등록 희귀·중증난치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65일,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, 이외 기타 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

급여일수 연장승인

-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을 시 연장승인신청서를 읍·면사무소에 제출
- 등록 중증질환, 등록 희귀·중증난치질환은 90일, 만성 고시질환 75일, 기타질환 1회 연장 90일, 2회 연장 시 55일 이내

조건부 연장승인(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)

- 연장승인신청자 중 본인이 선택한 1~2개의 의료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해 주는 제도로 1차 의료기관 한 곳 지정
- 복합질환의 경우 추가 지정 가능(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: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요함)

연장승인(선택의료급여기관) 미신청자는 건강보험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

(※ 건보부담률 : 입원 20%, 외래·약국 30%)

의료급여 지원

건강생활유지비

-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
- 지원금액 : 1인당 매월 6천원 /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납부 (가상계좌 관리)
-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다음연도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(2,000원 미만은 지급에서 제외함)

중증질환, 희귀·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

- 의료급여 수급자 중 특정질환을 가진 경우 추가적 혜택을 주는 제도
- 중증질환자(암, 중증화상 등), 희귀·중증난치질환자(결핵 포함)에 대해 본인부담 면제, 1종 의료급여 자격 부여, 의료급여 절차 예외 등

장애인보조기기

-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보조기기 지원
- 의지, 보조기, 보청기,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 등

요양비 지원

-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
-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,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,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, 산소 치료 요양비, 인공호흡기 치료 요양비, 기침유발기 요양비 등

노인틀니

-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대해 의료급여 적용
- 본인부담금 1종 수급권자 5% / 2종 수급권자 15%

치과임플란트

-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의료급여 적용
- 본인부담금 1종 수급권자 10% / 2종 수급권자 20%

2종 치매환자 및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완화

- 2종 치매환자 입원 시 5% / 외래(병원급 이상) 시 5%
- 2종 6세 미만 아동 입원 시 본인부담 없음 / 6~15세 이하 아동 입원 시 3%



기타 안내사항

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검진

- 국가적으로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.
건강검진 대상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검진하시기 바랍니다.
- 2024년 검진대상 : 주민등록상 짝수년도 출생자

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

-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상담,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 기관 이용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- 병·의원 이용 및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

